

## 장애인 복지일자리 모집공고

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### 1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 : 2017. 5. 31 ~ 2017. 12. 31
  - 근무시간 : 주 14시간 근무(월56시간)
  - 근무지 : 석남2동 주민센터
  - 보수 : 월 363,00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- \*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### 2. 모집분야 및 기간

- 모집인원 : 1명
- 모집분야 :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(환경정비)
- 모집기간 : 2017. 5. 17(수) ~ 5. 24(수) 09:00~18:00

### 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- 신청자격
  -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
- 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#### ※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  
(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)
-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(단,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)
  - 소득이 없는 사업자 : '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' 제출
  - 연소득이 4,356,000원 이하인 사업자 : '소득금액증명원' 제출
-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(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)
  -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
  -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(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
-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
(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)
-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-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-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4. 제출서류

-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자필서명 필수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 1부
-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·뒷면) 1부
  - ※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  - 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(자필서명 필수)
-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
  - ※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
- 소득금액 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
  - ※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
- 여성가장일 경우(해당자에 한함)

구 분	첨 부 서 류	
배우자 무(無)	가족관계등록부	
배우자 유(有)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	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
5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대리접수 불가)

6. 접수처 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· 주민센터

7. 기타 참고사항

○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\*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」

- 24세 이하(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25세 이하(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초·중·고등학생인 수급(권)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

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
-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 적용 대해 30% 공제 적용

○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\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304)

- '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' 서식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·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- 최종 배치된 근무지는 희망 근무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(TEL.560-4312)이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·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5월 16일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